

삼척시의회 포상규정안

의안	
민호	

발의년월일 : 1995. 1. 27
발의자 : 신상균의원외 6인

1. 제안이유

삼척시의회에 공직심사위원회를 두고, 포상의 종류, 공직사항등을 심의 결정도록 시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개인(공무원포함)에게 수여한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므로써,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시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개인(공무원포함)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빌지 제1호서식 내지 빌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폐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시기) 포상시기는 이 규정 제4조에 따라 각급기관·단체의 장, 대표 등의 추천이나 의뢰가 있을 때, 또는 포상권자가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할 때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포상추천) 포상의 추천은 각 기관·단체의장 또는 대표가 빌지 제4호서식에 의해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질정) 포상은 제10조제6항의 심의질과에 의거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공직심사) 포상은 공직조서에 의하여 공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의 종류, 공직사항 등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 2인중 년장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5인과 의회사무국장을 포함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제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의결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제5호서식에 의한 공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이중 폭상의 금지) 폭상을 통일화 공격에 대하여 이중으로 해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비치 등) ①포상의 납별율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율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 제8조, 제10조, 제11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부록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장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장	문)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장 ○ ○ ○ (직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장 ○ ○ ○ (직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장 ○ ○ ○ (직 인)		

[별지 제4호시식]

공적조사서

(앞면)

공적조사서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군민(군인의경우)	
④주소			
⑤소속		⑥직위	
⑦직급		⑧근무기간	년 월
⑨주친훈적		⑩주친순위	
주요학력및경력			
⑪인원일	⑫이력	⑬인원일	⑭이력
파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기록)			
⑮인원일	16내용	17인원일	18내용
조사자			
19소속		20직위	
21직급		22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주친관	직위	성명	년 월 일 (직인)

(뒷면)

공적사항

[별지 제5호서식]

공직심사의결서

공직심사 요구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내용
의결주문				
이유				
199 년 월 일				
포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 공직심사 대상이 많은 시 그 명부를 별첨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포상대장